



특허 Q&A

Q. 어떤 새로운 제품을 3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하였는데, 그 중 1인이 본인 등 공동참여자의 동의도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무단 출원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 경우 공동발명자인 본인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?

A.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인 공유(특허법 제33조 제2항)로 하며,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(특허법 제44조)하여야 합니다. 특허법 제44조 위반은 특허거절이유(특허법 제62조제1호), 특허이의신청이유(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), 특허무효이유(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1호)에 해당합니다.

Q. 논문발표 후 특허출원하면서 실수로 공지예외적용을 기재하지 않고 출원하고 나서 현재 논문발표 후 2개월이 조금 더 지났으며, 출원한지도 20일 이내입니다. 이럴 때 특허출원서의 출원서등 보정을 하여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?

A. 특허법 제30조에 의한 “공지예외적용”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신규성 상실에 해당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출원을 해야 하며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,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특허출원 시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출원서 등 보정으로서 공지예외적용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.

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